
이용 안내서

[복]정애케어 온양정애요양원

【온양정애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시설명	사회복지법인 정애케어 온양정애요양원
홈페이지	www.jungae.kr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112번길 23-5

입소정원	86명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대상자
	계약기간	입소일시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계약의 목적	이용자, 신원인수인 및 시설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소서류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 계약서 체결 2부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주민등록등본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건강진단서 바. 소견서, 처방전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협력 의료기관	미래한국병원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소견에 의해 의료가 필요할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협력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 2. 위급 상황 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협력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 3. 시설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의료가 필요할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다. 4. 기타 의료가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 또는 병의원 등을 내원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중 특별한 설비와 물건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은 계약만료 후 즉시 설비 등을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3.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제 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에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시설물 및 부대장비 등을 사용 중 이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시설물 사용 중 물품판매와 이와 관한 홍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6. 시설물 내에 음식물 반입 시 시설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시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시설에 확인 및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 분실 시 이용자와 신원인수인이 책임을 진다. 8.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	--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1	1	1	1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	1	3	24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1	3	1	
주40시간	주40시간	주40시간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시설급여	
급여수가	1등급	74,850원 (1일)
	2등급	69,450원 (1일)
	3~5등급	64,040원 (1일)

◇ 비급여 항목별 비용

비급여항목	비용	
식재료비	1일: 7,500원	1식 기준 2,300원
		1일 간식비 600원
	경관식: 1,150원x6캔 (1일: 6,900원)	
이·미용비	무료 (자원봉사자 활용)	

◇ 시설규모

시설규모			
부지	3,688.8m ²	건물면적	2,395.74m ²
3층	프로그램실, 목욕실, 재활치료실, 입소자생활실		
2층	프로그램실, 목욕실, 자원봉사자실, 입소자생활실		
1층	사무실, 상담실, 면회실, 간호사실, 식당, 조리실, 영양보호사실, 특별실, 입소자생활실, 린넨실		
지하 1층	전기실, 기계실, 펌프실, 소화펌프실		

◇ 보험가입 현황

보호가입 현황	
전문인 배상책임	영업 배상책임
화재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정부지원상해공제(종사자)

◇ 기관 특성 및 우수사례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 최우수“A” 등급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 연속 최우수“A” 등급

2021년 8월 31일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증축 완료

치매예방인지강화 VR솔루션 이용한 프로그램 제공

【별표 6】

- 입 소 규 칙 -

1. 이용자는 “시설 생활 수칙”을 준수한다.
2. 이용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및 의뢰인(이하 “보호자”라 칭함)의 요청으로 외출·외박·면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진다.
3. 이용자의 과실과 자해 등으로 인한 본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에 대하여 신체적 손상, 사망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이며 귀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와 보호자가 사전에 고하지 아니한 질환의 발병이나 발작에 의한 신체적 손상, 사망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이며 귀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이용 중 지병 등이 원인이 되어 응급상황발생시, 그 위급한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보호자는 즉시 신병을 인수하여 응급실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문케어사가 필요할 정도로 지병이나 치매가 진전 되면 귀원에서 제시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퇴원(전원)한다.
6. 10일 이상 초과하는 장기입원 및 외박이 있을 경우, 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한하여 월 수납 액을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유보할 수 있다.
7. 갑작스런 이용자 사망발생 시 귀원의 기본적 응급조치 등을 취한 후의 임종에는 귀원에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귀원의 시설 등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충분히 변상한다.